

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의 추가신호 (제56조 관련)

선종	작업내용	표시등화	가시거리	설치기준
트롤어선	외끌이의 경우	어망을 투입하고 있는 경우	수직선상에 백색 등화 2개	법 제80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의한 다른 등화보다 그 가시거리가 짧아야 하되, 1해리 이상의 수평선 주위에서 볼 수 있어야 한다.
		어망을 견져 올리고 있는 경우	수직선상에 홍색의 등화 1개와 그 윗부분에 백색등화 1개	
		어망이 장애물이 걸린 경우	수직선상에 홍색 등화 2개	
	쌍끌이의 경우	외끌이의 경우에 해당하는 등화 외에 야간에는 한 쌍을 이룬 다른 선박의 진행방향을 비추는 탐조등 1개		
선망어선	어구에 의하여 조종 성능이 제약을 받고 있는 경우	수직선상에 1초마다 번갈아 섬광을 발하며, 꺼지고 켜지는 시간이 동일한 황색의 등화 2개		